

임실군의회 김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임실군의회 의장



임실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규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군민화합과 문화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수정

- 임실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수정

나. 조항 신설(안 제2조 2항)

- 읍·면민의 날 조항 추가

다. 조항 수정(안 제3조 1항)

-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기념행사 실시에 관한 사항

라. 조문 신설(안 제4조)

-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4년 11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3) 전자우편:charity81@korea.kr

4. 개정안: 붙임

임실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민의날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임실군민의날조례”를 “임실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읍·면민의 날은 해당 읍·면 문예·체육행사 등 관련 위원회·협의회에서 결정한 날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및 읍·면의 날 기념식
2. 각종 민속·문화·예술·체육행사 등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예산지원) 군수는 제3조 규정에 따라 행사를 계획하고 주최·주관하는 위원회 및 협회 등에 행사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임실군민의날조례</u>	<u>임실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에 관한 조례</u>
제2조(결정) (생략)	제2조(결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설></u>	② 읍·면민의 날은 해당 읍· 면 문예·체육행사 등 관련 위 원회·협의회에서 결정한 날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거행) 제1조에 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군민의 날에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제3조(기념행사 거행) ①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을 기념하 는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및 읍·면의 날 기 념식 2. 각종 민속·문화·예술·체 육행사 등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제4조(예산지원) 군수는 제3조 규 정에 따라 행사를 계획하고 주 최·주관하는 위원회 및 협회 등에 행사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위임규정) (생략)	제5조(위임규정) (현행과 같음)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삭제></u>
②(폐지조례) 임실군 조례 제10 호 임실군민의날조례는 이를 폐 지한다.	<u><삭제></u>

임실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임실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나. 관련조문 : 임실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예산지원)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임실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나. 비용추계의 결과

- 50,000천원 / 군민의 날 (1회)

- 36,000천원 / 임실, 성수, 오수, 삼계, 지사, 덕치 6개 읍·면민의 날
* 각 면당 6백만원 지원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년도	구분	지급기준	총예산	비고
2025	군민의 날	50,000천원×1회	50,000	
2025	읍·면민의 날	6,000천원×6개 읍·면	36,000	

3. 재원조달방안 : 군비 조달

4. 연도별 비용추계표(2025~2029) : 별첨 참조

5. 작성자 : 김종규 의원

<임실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입							
세출							
임실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지원		86,000	86,000	86,000	86,000	86,000	43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						
자체 수입	소계	86,000	86,000	86,000	86,000	86,000	430,000
	지방세	86,000	86,000	86,000	86,000	86,000	430,000
	세외수입						
	...						
지방채							
기금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 ·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 ·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 · 체육 · 문화 · 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 운영 · 지도
 - 나. 도서관 · 운동장 · 광장 · 체육관 · 박물관 · 공연장 · 미술관 · 음악당 등 공공교육 · 체육 ·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시 · 도유산의 지정 · 등록 · 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 · 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 · 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 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 · 경계 · 진압 · 조사 및 구조 · 구급
-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 국제기구 · 행사 · 대회에 유치 · 지원
 -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 협력